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82호 2026. 1. 26.(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하천점용 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6-4호)

공 고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6-190호)
- 예천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예천군 공고 제2026-192호)
- 예천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예천군 공고 제2026-197호)
-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6-199호)
- 예천군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6-203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한천(지방하천)
점 용 자 주 소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위 치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432-1번지
점용면적	일시 : 116㎡, 영구 : 38㎡
점용목적	공작물의 설치
사업개요	예천취수장 집수매거 주변 저수호안 설치
점용기간	일시 : 2026년 01월 26일 ~ 2026년 05월 31일 영구 : 2026년 01월 26일 ~ 영구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예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노후화, 화재·설비 등 안전관리 위험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현행 공동주택비용 지원사업 범위 확대 및 한도 설정을 통한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한도 설정(안 제5조~제6조)

- 지원범위 확대 : ‘20세대 이상’ 문구 삭제

- 보조금 지원 한도 마련 : 지원금 상한액 60,000천원
- 지원항목 추가 : 외벽도색, 누수에 따른 방수

나.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한도 설정(안 제5조~제6조)

- 횟수별 차등 지원(비율)기준 중 '5회차 신청, 50%이내 지원'은 삭제하고, 지원금 상한액(5,000천원)을 신설

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내실화(안 제6조의2)

-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비용 지원 등의 근거 마련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라.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 단축(안 제18조)

- 층간소음 갈등 해소 등 분쟁조정신청 활성화 유도를 위한 조정기한 단축
 -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 → 30일 이내 심의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2-738호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

마.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요청의 동의비율 완화(안 제24조)

-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지자체 감사요청 입주민동의 동의비율 완화
 - 감사요청 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 동의 → 10분의 2이상

4.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예천군수(참조 : 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 화 : 054-650-6352, Fax 054-650-6359
- 전자우편 : blueblue141@korea.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축과(전화 : 054-650-63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외벽도색, 누수에 따른 방수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금 상한액은 6,0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3.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금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4회차”를 “4회차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한다”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과되고 20세대 이상으로”를 “경과하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거나 주민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경과 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3이상”을 “2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범위) ① (생 략)	제5조(지원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에 한정하여 공용시설물 관리비 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2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다</u> <u>음</u> 각 목의 소규모 공동주택 (서로 인접하게 건축되어 동 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2. <u>다음</u> -----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공동주 택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6조(지원대상 등) ① ----- ----- ----- -----

우에 지원한다.

1. ~ 10. (생 략)

<신 설>

11.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서 신설>

1. ~ 4. (생 략)

③ 군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
택에 한정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
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2.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4. 4회차 신청 시 총 사업비의 6

-----.

1. ~ 10. (현행과 같음)

11. 외벽도색, 누수에 따른 방수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
-----.
다
만, 지원금 상한액은 6,000만원
으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
한 사업

3.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
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4. (현행 제2호와 같음)

④ -----
-----.
다만,
지원금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4회차 이상 -----

0% 이내 지원

5. 5회차 이상 신청 시 총 사업
비의 50% 이내 지원

제6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 (생략)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
되고 20세대 이상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를 말한다)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후단
신설>

③ (생략)

제18조(분쟁의 조정) ① 제15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쟁조

<삭 제>

제6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① -----

-----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 경과
하고 -----

-----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거나 주민안
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분쟁의 조정) ① -----

-- 30일 -----

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4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
자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
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
는 날인된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등
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청인연명
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감사 요청) ① -----

----- 2이상 -----

-----.

② · ③ (현행과 같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주택관리업자
 - 라. 임대사업자
 -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 1. 19.>
17. 삭제 <2016. 1. 19.>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충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충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충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충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충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충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충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충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충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충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충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2024. 3. 19.>

⑤ 공동주택 충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충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충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충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충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충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1. 충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충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충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⑧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10. 24.>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2.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⑩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0. 24.>

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화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

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들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72조(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2.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3.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4.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①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제10장 보칙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6. 13., 2023. 10. 24.>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23. 10. 24.>

[제목개정 2023. 10. 24.]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

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

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예천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150번지 일원의 진호국제양공장 구역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6일
예 천 군 수

1. 공람기간 : 2026. 1. 26. ~ 2026. 2. 9. (14일간)

2. 공람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3. 공람내용 :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안)

4. 관련도면 및 조서 : 붙임참고

※ 붙임 결정도(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생략)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의견제출 : 예천군청 도시과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천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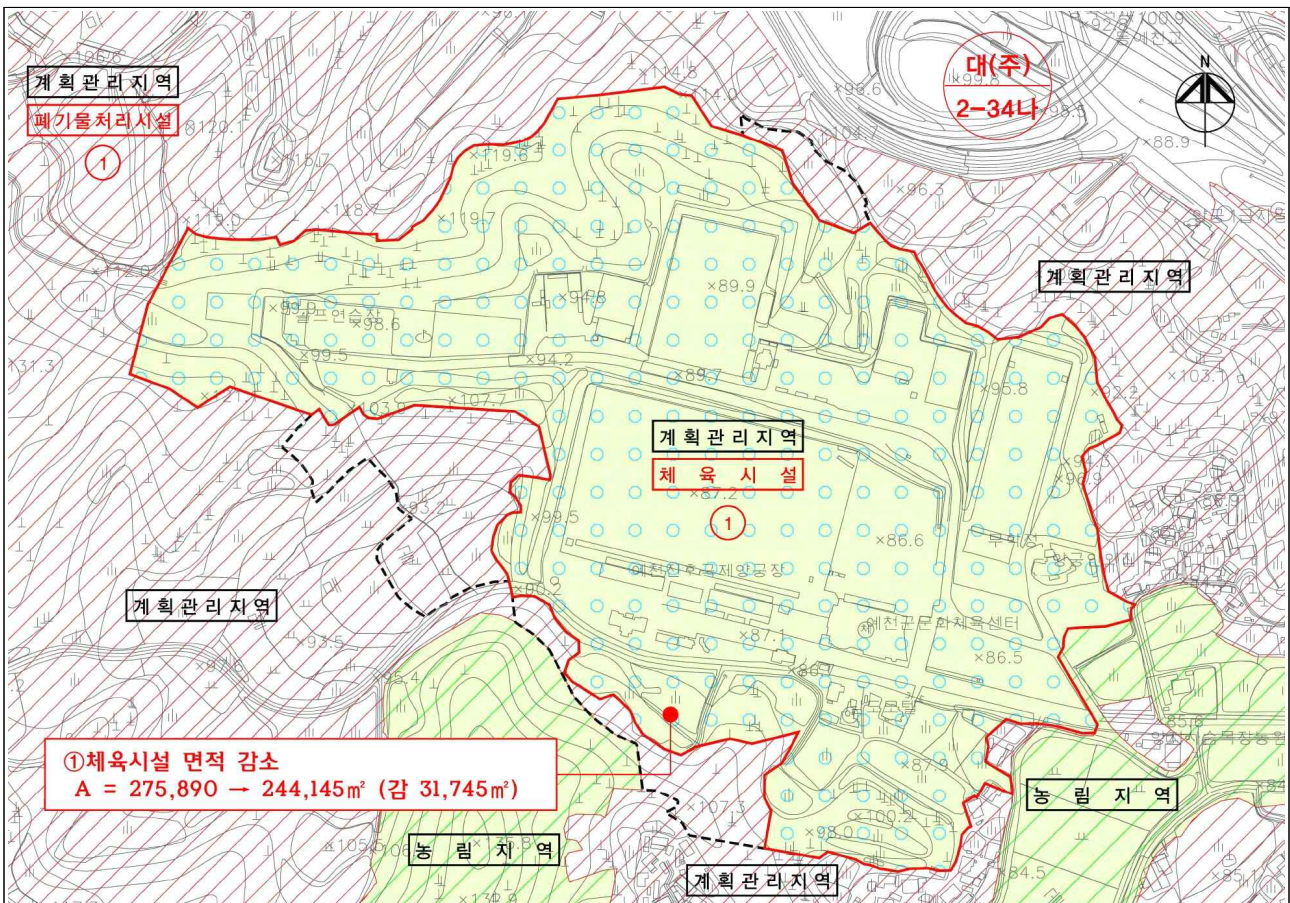
1) 체육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	체육시설	양궁장	예천읍 청북리 150번지 일원	275,890	감) 31,745	244,145	예천군 고시 제1995-635호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체육시설	체육시설 면적 감소 A = 275,890 → 244,145 ㎡ (감 31,745㎡)	예천 종합스포츠타운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 구역 조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예천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경상북도 고시 제2025-464호(2025.12.1.)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된 군계획시설(공원)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 및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열람공고하오니 열람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6일

예 천 군 수

1.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예천읍 서본리 24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예천 서본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내용

- 면 적 : 공원전체면적 49,789㎡ 중 11,911㎡

- 내 용 : 토공·배수공·구조물공, 포장공 등 1식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천군수(산림녹지과)
-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종 류	성 명	
합계				41,443	11,911					
1	예천읍 서본리	65-2	임	552	310		예천군			
2	예천읍 서본리	65-14	임	2,284	1533		예천군			
3	예천읍 서본리	65-48	전	176	149		예천군			
4	예천읍 서본리	65-50	임	330	339		예천군			
5	예천읍 서본리	69	전	222	190		예천군			
6	예천읍 서본리	239-1	전	313	313		예천군			
7	예천읍 서본리	240	대	15,976	979		예천군			
8	예천읍 서본리	241-1	전	358	358		예천군			
9	예천읍 서본리	243-3	전	860	635		예천군			
10	예천읍 서본리	243-6	전	172	172		예천군			
11	예천읍 서본리	243-7	전	110	110		예천군			
12	예천읍 서본리	243-8	전	88	53		예천군			
13	예천읍 서본리	243-9	전	26	26		예천군			
14	예천읍 서본리	244	묘	1,306	1060		예천군			
15	예천읍 서본리	245	임	5,045	828		예천군			
16	예천읍 서본리	247	묘	6,202	306		예천군			
17	예천읍 대심리	39	전	1,584	237		예천군			
18	예천읍 대심리	40-2	묘	5,839	4,313		예천군			

2.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간시설

가)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	서본 공원	근린 공원	예천읍 서본리 247번지 일원	49,789	-	49,789	건고 제713호 (1967.12.26)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

시설 구분	기정					변경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축물 (㎡)		구성비 (%)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축물 (㎡)		구성비 (%)
			건축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합계	49,789	8,551	19.5	19.5	100.0	49,789	8,537 (감 14)	25.5 (증 6.0)	25.5 (증 6.0)	100.0
기반 시설	4,132	4,132	-	-	8.3	4,422 (증 290)	4,422 (증 290)	-	-	8.9
조경 시설	144	144	-	-	0.3	144	144	-	-	0.3
휴양 시설	794	794	-	-	1.6	497 (감 297)	497 (감 297)	-	-	1.0
유희 시설	185	185	-	-	0.4	- (감 185)	- (감 185)	-	-	0.0
운동 시설	84	84	-	-	0.2	266 (증 182)	266 (증 182)	-	-	0.5
교양 시설	1,650	1,650	-	-	3.3	1,650	1,650	-	-	3.3
편의 시설	1,562	1,562	19.5	19.5	3.1	1,558 (감 4)	1,558 (감 4)	25.5 (증 6.0)	25.5 (증 6.0)	3.1
녹지· 기타	41,238	-	-	-	82.8	41,252 (증 14)	-	-	-	82.9
공원 사율	◦ 8,551 ÷ 49,789 × 100 = 17.2% (법정 40%이하)					◦ 8,537 ÷ 49,789 × 100 = 17.1% (법정 40%이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별표4〉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따른 근린공원 공원시설률 40%이하 준수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시설 구분	시설명	부	기정					변경					비고
			부지 면적 (㎡)	건축 물 (㎡)			공 작 물	부지 면적 (㎡)	건축 물 (㎡)			공 작 물	
				동수 (층)	건축 면적	연면 적			동수 (층)	건축 면적	연면 적		
합 계			49,789	1 (지상1)	19.5	19.5		49,789	1 (지상1)	25.5 (증6)	25.5 (증6)		
기 반 시 설	소 계		4,132	-	-	-		4,422 (증290)	-	-	-		변경
	도 로	1-1	3,686	-	-	-		3,991 (증305)	-	-	-		변경
	광 장		446	-	-	-		431 (감15)	-	-	-		변경
	광장	1-2	446	-	-	-		431 (감15)	-	-	-		변경
조 경 시 설	소 계		144	-	-	-		144	-	-	-		
	잔디마당	2-1	144	-	-	-		144	-	-	-		
	플랜터의자	①	-	-	-	-	6개소	-	-	-	-	-	폐지
휴 양 시 설	소계		794	-	-	-		497 (감297)	-	-	-		변경
	휴게쉼터-1	3-1	398	-	-	-		133 (감265)	-	-	-		변경
	휴게쉼터-2	3-2	85	-	-	-		76 (감9)	-	-	-		변경
	휴게쉼터-3	3-3	79	-	-	-		84 (증5)	-	-	-		변경
	휴게쉼터-4	3-4	82	-	-	-		82	-	-	-		
	휴게쉼터-5	3-4	92	-	-	-		80 (감12)	-	-	-		변경
	휴게쉼터-6	3-4	58	-	-	-		42 (감16)	-	-	-		변경
	스탠드	①	-	-	-	-		-	-	-	-	32m	신설
	전망파고라	②	-	-	-	-		-	-	-	-	1m	신설
	파고라	③	-	-	-	-		-	-	-	-	3개소	신설
	스윙벤치	④	-	-	-	-		-	-	-	-	4개소	신설
	썬베드	⑤	-	-	-	-		-	-	-	-	5개소	신설
	등의자	⑥	-	-	-	-	10개소	-	-	-	-	15개 소 (증5개 소)	변경
	앉음벽	③	-	-	-	-	27m	-	-	-	-		폐지
	파고라의자셋트	④	-	-	-	-	4개소	-	-	-	-		폐지

시설구분	시설명	부호	기정					변경					비고
			부지면적 (㎡)	건축물 (㎡)			공작물	부지면적 (㎡)	건축물 (㎡)			공작물	
				동수 (층)	건축 면적	연면 적			동수 (층)	건축 면적	연면 적		
유흥시설	소 계		185	-	-	-		- (감185)	-	-	-		폐지
	숯놀이터	4-1	185	-	-	-		- (감185)	-	-	-		폐지
	통나무건너기	⑤	-	-	-	-	1개소	-	-	-	-		폐지
	숯속그네	⑥	-	-	-	-	1개소	-	-	-	-		폐지
	네트망오르기	⑦	-	-	-	-	1개소	-	-	-	-		폐지
	숯웁막	⑧	-	-	-	-	1개소	-	-	-	-		폐지
운동시설	소 계		84	-	-	-		266 (증182)	-	-	-		변경
	체력단련시설	5-1	84	-	-	-		- (감84)	-	-	-		폐지
	운동공간1	4-1	-	-	-	-		133 (증133)	-	-	-		신설
	운동공간2	4-2	-	-	-	-		133 (증133)	-	-	-		신설
	운동파고라	⑦	-	-	-	-		-	-	-	-	1개소	신설
	복합체력단련시설	⑧	-	-	-	-		-	-	-	-	1개소	신설
	체력단련시설-1	⑨	-	-	-	-	1개소	-	-	-	-	1개소	
	체력단련시설-2	⑩	-	-	-	-	1개소	-	-	-	-	1개소	
	체력단련시설-3	⑪	-	-	-	-	1개소	-	-	-	-	1개소	
	체력단련시설-4	⑫	-	-	-	-	1개소	-	-	-	-		폐지
교양시설	소 계		1,650	-	-	-		1,650	-	-	-		
	충혼광장	5-1	1,650	-	-	-		1,650	-	-	-		
편익시설	소 계		1,562	1 (지상1)	19.5	19.5		1,558 (감4)	1 (지상1)	25.5 (증6)	25.5 (증6)		변경
	주차장	6-1	1,523	-	-	-		1,526 (증3)	-	-	-		변경
	공중화장실1	6-2	39	1 (지상1)	19.5	19.5		32 (감7)	1 (지상1)	25.5 (증6)	25.5 (증6)		변경
녹지	-		41,238	-	-	-		41,252 (증14)					변경

다)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연장 (m)	면적 (㎡)	기능	시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합계	기정				1,259	3,686				
	변경				1,190	3,991				
기정	소로	2	1	9.0	43	425	진입로	부지경계	주차장	
변경	소로	2	1	9.0	52	515	진입로	부지경계	주차장	
기정	소로	3	1	3.5~8.0	54	315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변경	소로	3	1	3.5~8.0	54	315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기정	소로	3	2	2.5	437	1,092	산책로	충혼광장	주차장	
변경	소로	3	2	3.0	437	1,307	산책로	충혼광장	주차장	
기정	소로	3	3	2.5	2	4	산책로	소3-1	소3-9	
변경	소로	3	3	2.5	1	3	산책로	소3-1	소3-9	
기정	소로	3	4	2.5	74	200	산책로	휴게쉼터5	소3-2	
변경	소로	3	4	3.0	73	223	산책로	휴게쉼터5	소3-2	
기정	소로	3	5	2.5	36	103	진입로	부지경계	소3-8	
변경	소로	3	5	2.5	45	113	진입로	부지경계	소3-8	
기정	소로	3	6	2.0	79	162	산책로	휴게쉼터3	소3-2	
변경	소로	3	6	3.0	78	233	산책로	휴게쉼터3	소3-2	
기정	소로	3	7	2	76	153	진입로	부지경계	소3-2	
변경	소로	3	7	2	76	153	진입로	부지경계	소3-2	
기정	소로	3	8	2.0~3.0	220	655	진입로	부지경계	광장	
변경	소로	3	8	4.0	205	821	진입로	부지경계	광장	
기정	소로	3	9	2.0~2.5	112	197	산책로	소3-2	소3-1	
변경	소로	3	9	2.0~2.5	112	197	산책로	소3-2	소3-1	
폐지	소로	3	10	1.5~2.0	15	26	진입로	소2-1	부지경계	
기정	소로	3	11	2.0	48	97	산책로	소3-2	소3-9	
변경	소로	3	10	2.0	48	97	진입로	소2-1	부지경계	
폐지	소로	3	12	3.0	54	243	진입로	휴게쉼터5	부지경계	
기정	소로	3	13	1.5	9	14	진입로	주차장	부지경계	
변경	소로	3	11	1.5	9	14	진입로	주차장	부지경계	

※ 위 도로는 군계획시설이 아닌 공원 내 도로용지 구분 표시임.

3. 열람기간 : 2026. 1. 26. ~ 2026. 2. 9. (14일간)

4. 열람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예천읍 충효로 111, 4층)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 및 산림녹지과(☎054-650-63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제도·사업 등을 매년 정기적·수시적으로 점검하여 주변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경우 이를 폐지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일몰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군수의 책무, 일몰의 결정(안 제4조)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모든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

-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책 일몰 여부를 결정

다. 일몰대상 시책(안 제5조)

- 목적달성, 성과 미흡, 중단 필요, 주민의 호응 없이 불편 증대 등

라.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안 제6조 ~ 제8조)

-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경미한 시책은 소관부서 장이 결정 가능
-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참석 가능

마.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 (참고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 전화 : 054-650-6056
- 팩스 : 054-650-6059

- 전자우편 : chlwl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전화: 054-650-60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의 일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시책 등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재정낭비 요인을 억제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예천군이 정책적 결정을 통해 집행·운영·지원하는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본청을 포함한 소속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전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

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예 천 군



1. 규칙명 : 예천군보 규칙

2. 개정이유

- 군보의 정기 발간일을 당초 매주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군보 게재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발간주기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3조)

- 군보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예천군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고 : 홍보소통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홍보소통과
- 전화 : 054-650-6071
- 팩스 : 054-650-6069
- 전자우편 : junior123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홍보소통과(전화: 054-650-60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월요일”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발간주기) 군보는 매주 월요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발간주기) ----- <u>월요일과 목요일</u> ----- ----- --.